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376
----------	------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 의 자 : 이소영 · 박지혜 · 민형배

김정호 · 염태영 · 김성환

용혜인 · 박정현 · 차지호

허영 · 위성곤 · 허성무

서왕진 · 한창민 · 김용태

정진욱 · 강준현 · 이학영

박홍배 · 김민석 · 추미애

김종민 · 이광희 · 양부남

임미애 · 이병진 · 최민희

정준호 · 송재봉 · 황명선

강득구 · 박정 · 이연희

문금주 · 김한규 · 윤준병

이기현 · 전진숙 · 문대림

황정아 · 한정애 · 박희승

정태호 · 김영배 · 김원이

백승아 의원(46인)

주 문

올해 여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기후지옥’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끔찍하게 더운 폭염과 몇 장의 달력을 넘겨도 끝나지 않는 열대야, 처음으로 추석에 발령된 ‘폭염 특보’는 파국

적 기후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일임을 실감하게 한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이 이미 1.5도를 넘겼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수년 내에 2도 상승선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인류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파국적 재앙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다가올 때, 재앙에 대비하고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사방에서 아우성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감축목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그것이 헌법 위반에 이를 정도임을 지적했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이 쏘아 올린 공은 이제 국회와 정부로 다시 넘어왔다.

이제 막 시작된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확실하고 명백하게 다가오고 있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이미 시작된 기후지옥에서

국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제22대 국회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사회대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로 목표를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입법화할 것을 결의한다. 경로 목표는 ‘남아 있는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 온도 상승의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핵심 조치임을 인식하며,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2035년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수반되는 실행’에 주력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화석연료와의 단호한 결별이 필수적임을 직시하며, 즉시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석탄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한 노력을 촉구하며, 국회는 이에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RE100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평균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재앙을 막는 일이 결국은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정적 노력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IPCC가 제시한 수준(글로벌 GDP의 3~6%)까지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와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효과적인 탄소비용 부과 조치를 도입할 것을 결의한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제22대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어 신속한 입법조치에 협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기후재난 대응이 아닌, 모든 사회 인프라를 변화된 기후위험에 맞게 재설계하는 대대적인 사회적 대개조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그에 수반되는 입법적·예산적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앞에 놓인 파국적 기후위기를 막는 데에 있어서 부분적·점진적 노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모든 사회 구성원과 함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책임 있는 전방위적인 입법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이미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넘어섰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온 상승 목표를 초과했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최근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염으로 최고기온이 50도를 넘어섰고,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루 만에 한 해 동안의 강수량이 쏟아지는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올해 8월의 폭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추석 연휴에 유례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G7 국가들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합의한 반면, 석탄발전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탈석탄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IPCC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어 운용 중이지만, 재원이 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현저히 낮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배출권 할당으로 일부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과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탄소배출권 가격 현실화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해야 함. 이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의 내용을 의결하려는 것임.